

회 보 서

우)07938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14 3층
E-Mail : woosol01@kapaland.co.kr 홈페이지 : http://wsapp.co.kr/

TEL. 02-2088-5512
FAX. 070-8290-5290

문서번호 : 12507-3004

시행일자 : 2025-07-23

수 신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엽

참 조 : 경매13계

제 목 : 감 정 의 료 에 대 한 회 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결재·공람		
	시간				
처리과	번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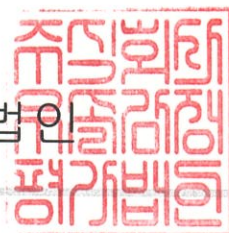
1. 저희 (주)우솔감정평가법인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07.22자 귀 제 『2025타경11044』호로 저희 법인에 의뢰하신 『오승훈 소유물건(2025타경11044)』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 부 : 1. 감정평가서 1 부
2. 청구서 1 부



(주)우솔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의뢰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엽

건명 : 오승훈 소유물건(2025타경11044)

번호 : 12507-30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우솔감정평가법인

WOOSOL Appraisal Company Limited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회대로 214, 3층(신정동)

TEL. (02)2088-5512

FAX. (070)8290-5290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이정기

이정기



(주)우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이정기



감정평가액	삼억삼백만원정 (₩303,000,0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엽	감정평가 목 적	경매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오승훈 (2025타경11044)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27	2025.07.27	2025.07.29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303,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303,00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김원규

김원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1.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서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뢰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격조사완료일인 2025년 07월 27일임.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은 2025년 07월 27일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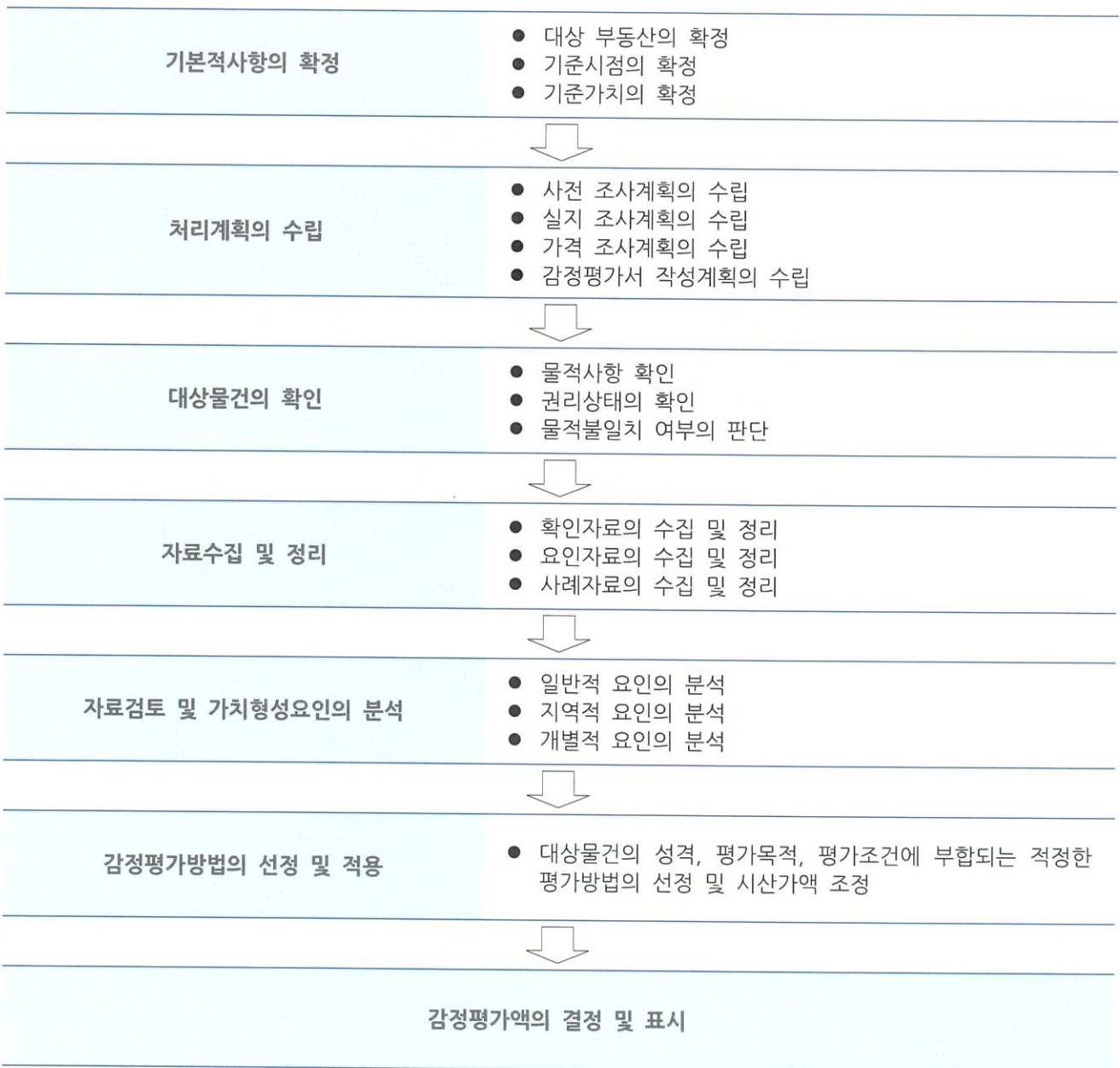
나. 감정평가 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감정평가 절차

본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를 근거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가. 감정평가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나.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 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적용 감정평가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 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일괄·구분·부분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음.

7. 기타 참고사항

-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개별호수, 면적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에 의거하였으며, 현황 구분건물의 위치·이용상황·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로 물적 동일성은 인정됨.
- 나.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내부 확인 및 임대차내역 확인은 생략하였으며,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은 외부관찰 및 도면, 전례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는 상이할 수 있는바 업무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 다. 본건은 별지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과 같이 확장형 발코니가 소재하나 공부상 전유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추가 면적 부분으로 적법한 확장 면적인바,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의 거래관행 및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대상 부동산의 개황

1. 대상 부동산 개요

가. 전체 단지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9-12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달래로5길 40(신월동)]			
건물명·동	JK시그니처 101동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사용승인 일 자	2022.03.11
대지면적 (㎡)	601	연면적 (㎡)	658.52
주 용 도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규 모	지하1층/지상6층

나. 대상 구분건물

기호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권 (㎡)	용도
	동	호수					
가	제101동	제4층 제404호	29.12	6.29	35.41	17.7067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대상 부동산 개황

항 목		내 용
입 지 조 건	위 치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서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함.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근거리 “화곡역(지하철 5호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주위환경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토 지 상 황	형상, 지세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임.
	접면도로 상태	본건 소재 부지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사항 등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목 [도로] 한정 / 지정기간 :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정),도시관리계획 입안중
건 물 상 황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이용상황	기호(가)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냉난방설비	-
	기타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 타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 타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2. 비교사례의 선정

가. 인근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

기 호	구분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실거래가액 (원)	전유단가 (원/㎡)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1	매매	신월동 104-***	*** B/2/2**	29.15	302,000,000	10,360,205	2025.04.13
							2022.08.19
2	매매	신월동 104-***	*** B/3/3**	29.15	304,000,000	10,428,816	2024.09.10
							2022.08.19
3	매매	신월동 108-**외	*** -/3/3**	29.34	255,000,000	8,691,206	2025.01.25
							2020.04.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인근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 호	평가 목적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수	전유면적 (㎡)	평가금액 (원)	전유단가 (원/㎡)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a	경매	신월동 109-**	***** 102/5/5**	27.4	301,000,000	10,985,401	2025.06.25
							2022.03.11
b	경매	신월동 109-**	***** 101/2/2**	29.95	310,000,000	10,350,584	2025.07.03
							2022.03.11

다. 인근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및 경매 낙찰가율

■ 인근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구 분	가격 수준	비고
인근 유사 부동산	전유면적(㎡) 기준 : 9,000,000원/㎡ ~ 1,100,000원/㎡ 수준	실거래가격 및 현장조사 등

■ 경매 낙찰가율

[출처: 인포케어]

지역 (기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4년 07월 ~ 2025년 06월)			
	낙찰가율(%)	총건수	낙찰건수	낙찰률(%)
주택	70.5	25건	4건	16.0
집합건물	88.6	1,319건	486건	36.8
토지	66.8	12건	3건	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비교사례의 선정

■ 거래사례 선정기준

- 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일 것
- ②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일 것
- ③ 기준시점으로부터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거래된 사례일 것.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 ④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 일체로 거래된 경우에는 배분법의 적용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사례일 것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할 것
- ⑥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이 있을 것

■ 비교사례 선정

상기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본건과 제반 가치형성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 1>을 비교사례로 선정함.

3. 사정보정

결정의견	본 비교사례는 실지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사정보정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시점수정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서울 강남지역 서남권)”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결정함.

본건의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2025.06)	100.4
사례의 매매시점 매매가격지수(2025.03)	100.0
시점수정치 (본건지수/사례지수)	$100.4/100.0 \approx 1.00400$

※ 미발표된 월의 매매가격지수는 발표된 매매가격지수 중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월의 매매가격지수를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호(가)/거래사례①

[주거용]

항 목	개별요인 비교		
		격차율	결정의견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1.00	대체로 유사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건물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대체로 유사함.
	단지 내 층 세대수 및 최고 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1.00	대체로 유사함.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환가성, 안정성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비준가액 = 사례단가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가치형성요인 비교

기 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 면적(㎡)	산정가액(원)	적용가액(원)
가	10,360,205	1.000	1.00400	1.000	10,401,646	29.12	302,895,926	303,000,000
-	-	-	-	-	-	-	302,895,926	303,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기호	층/호수	전유면적(㎡)	시산가액(원)	비고
가	제4층 제404호	29.12	303,000,000	-
합 계			303,000,000	-

2. 결정의견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 방법(원가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여 주된 방법에 대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40	109-12 위 지상 제이케이 시그니처 제10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6층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지하1층 (연면적제외)	22.12			
				1층 (연면적제외)	105.15			
				1층	17.2			
				2층	135.62			
				3층	135.62			
				4층	135.34			
				5층	106.31			
				6층	106.31			
				옥탑1층 (연면적제외)	19.6			
				제2종일반주거지역	601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4호	29.12	29.12	303,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6.29㎡ 포함)
				1 소유권	17.7067	17.7067		
				대지권	601			
합 계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151,500,000	
					건 물 :		151,500,000	
							₩303,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서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근거리에 "화곡역(지하철 5호선)"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 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기호(가)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소재 부지 서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평표면구역<공항시설법>, 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05)(지목 [도로] 한정 / 지정기간 : 2024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지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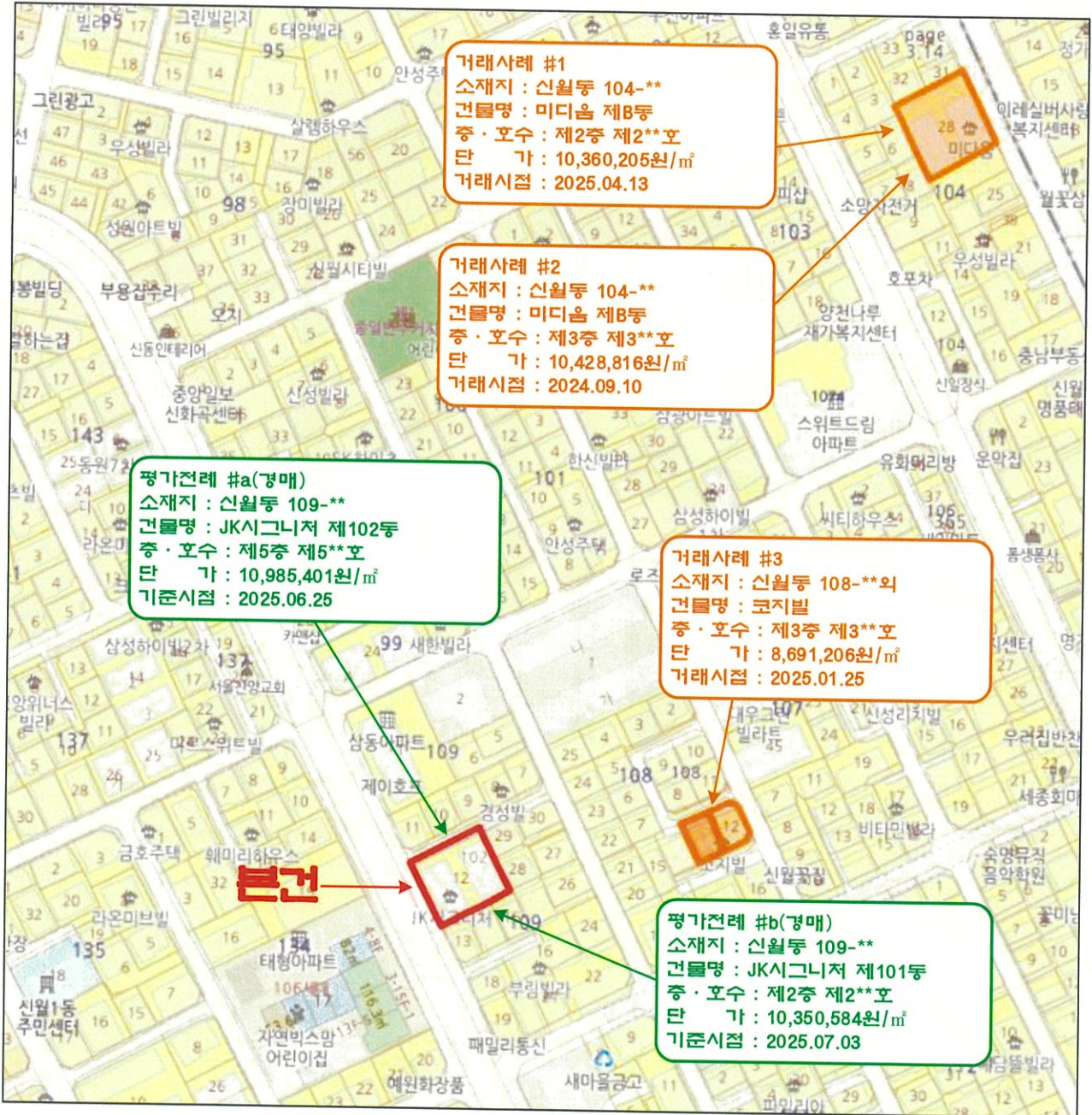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9-12 제이케이시그니처 제101동 제4층 제404호
-----	--------------------------------------------------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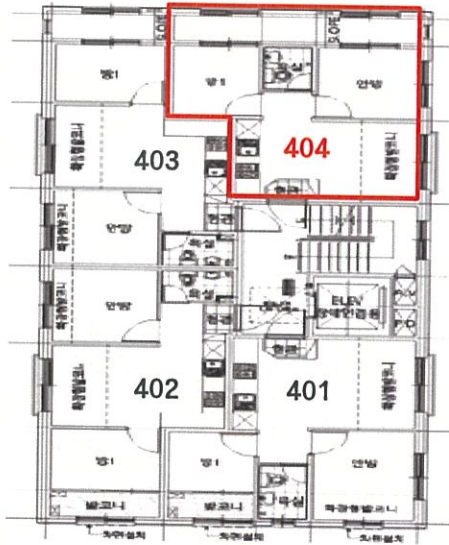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9-12 제이케이시그니처 제101동 제4층 제404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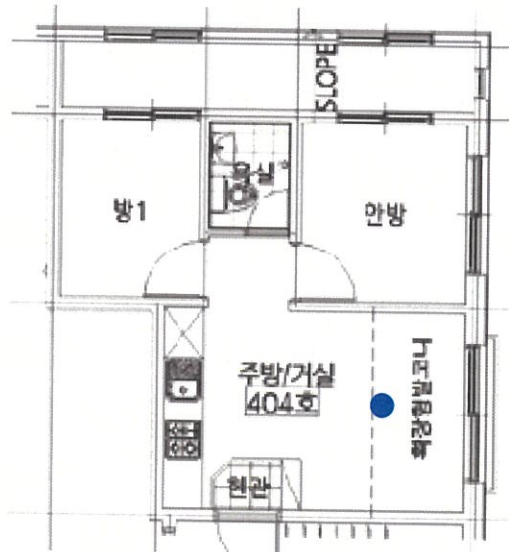


건물이용 및 임대상황

호별배지도



내부구조도



● 확장형발코니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9-12 제이케이시그니처 제101동 제4층 제404호 >

임대부분	임자인	보증금(원)	임대료(원)	비고
		임	대	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본건 1층 출입구



본건 북측 접면도로



본건 서측 접면도로

수수료 청구서

(전화: 02-2088-5512, FAX: 070-8290-5290)

문서번호 : 12507-3004

수신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선엽 귀하

제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5.07.22 자 귀 제 『 2025타경11044 』 호로

의뢰하신 『 오승훈 소유물건(2025타경11044) 』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

과목	금액	비고
평가수수료	422,640	
실비	여비	212,0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10,000
	공부발급비	12,000
	기타 실비	8,000
비	소계	242,000
특별용역비	-	
공급가액	664,000	1,000원 미만 절사
부가세	66,400	
합계	730,400	
기납부 착수금	-	
정산청구액	730,400	

붙임 : 감정평가서 1부

※ 송금처 ※

우리은행 : 1005-304-104426(예금주:(주)우솔감정평가법인)

(주)우솔감정평가법인 본사

대표이사 이정기

